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1479(2021.4.9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3894(2021.4.30.)
-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5.21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5.21.)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,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(2단계)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,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,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,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,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검토

< 완화 불가조치 사항 >
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(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)
-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편 및 홀덤편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

○ 적용기간: 2021. 5. 24.(월) 0시 ~ 2021. 6. 13.(일) 24시

○ 대상지역: 수도권

1)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 (무도장 포함), **홀덤편 및 홀덤편게임장**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집합금지

붙임1: 수도권 유흥시설, 홀덤편 및 홀덤편게임장 집합금지 조치 1부

- 대상시설: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2: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2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

- 대상시설: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전문점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이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,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* ‘학원’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.2.15.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3: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3)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수도권 숙박시설
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4: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4) 모임·행사
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
 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
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 - 시험 등의 경우,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

붙임5: 수도권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5) 종교시설

- 대상시설: 종교시설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 - * '종교시설'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 (2.15.)」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6: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6) 기타시설

- 대상시설: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경륜·경마·경정*, 미술관·박물관, 도서관, 키즈카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·안마소, 국제회의
- * '경륜·경마·경정'은 운영중단 유지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7: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7) 고위험사업장

- 대상시설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8: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8) 교통시설

-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9: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9) 국공립시설 등

-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 운영*
 - 경륜·경정·경마장 운영중단,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% 이내 제한, 이외 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 가능인원의 30% 이내로제한 원칙
 - * 경륜, 경정, 경마, 카지노 외의 시설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처·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
-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

10) 사회복지이용시설

- 이용인원 50%(최대 100명)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
 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 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
11) 직장근무

-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- 밀폐·밀접접촉이 많고,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- 민간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 협의 등을 통해 결정

4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
-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, 경정, 경마,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**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**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5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-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 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, 경기도지사



주무관	홍명기	행정사무관	박은경	생활방역팀장	조우경	사회전략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	강도태				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6319** 접수 **학생건강정책과-4395 (2021. 5. 23.)**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5 팩스번호 044-202-0000 / mk7069@korea.kr / 비공개(5)